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신청 안내문

1. 신청 자격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사람(또는 캘리포니아에서 혼인했거나 자녀를 둔 사람)은 누구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을 인정하는 명령과, 그 변경 사항이 반영된 출생증명서 정정발급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신청서는 양식 NC-500로 작성해야 하며, 성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식 NC-300을 사용하십시오.)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은 다음 사람 중 최소 1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2명 이상이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 중 1명 이상
- 미성년자의 후견인
- 피보호 미성년자의 소송 후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복지 및 시설법 제326.5조에 따름)
- 소년사법제도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름)
-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

해당 아동에게 법적 부모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양식 MC-025를 신청서에 첨부한 뒤 관련 내용을 설명하십시오.

2. 제출처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의 인정,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및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500)는 캘리포니아 내 어느 카운티의 상급법원에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에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호 미성년자의 소송 후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나,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거나 관정된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그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양식

모든 신청인은 다음 각 양식의 원본 1부와 사본 2부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및 이름 변경 신청서(양식 NC-500)
- 미성년자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및 출생증명서 정정발급 명령(양식 NC-530)
- 민사사건 표지(양식 CM-010)

일부 신청인은 다음 각 양식의 원본 1부와 사본 2부도 필요합니다.

- 사유소명명령—미성년자의 성별 변경 인정 및 출생증명서 정정발급(양식 NC-520). 다음과 같은 경우 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1)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이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 (2) 후견인, 소송 후견인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후견인 또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진술서(양식 NC-510G). 후견인, 소송 후견인인 변호사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 법원마다 추가 서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양식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작성

양식 NC-500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만 사용하십시오. (성별 변경 인정 명령을 구하는 성인은 양식 NC-300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식의 '신청인 정보' 항목:

- 항목 1에는 미성년자의 이름과 신청서에 서명하는 성인의 이름을 기재하십시오. 해당 항목에 기재된 사람 중 1명은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어떤 성인이 서명할 수 있는지는 상기 1항을 참조하십시오.)
- 항목 2에서는 신청하는 미성년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캘리포니아 출생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항목 3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생존한 부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중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항목 3d에 작성하십시오.



4. • 항목 4에서는 신청서에 후견인, 소송 후견인으로 지정된 피보호 변호사,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서명한 경우 해당 네모칸에 표시하고, 후견인 또는 소년사건 변호사 진술서(양식 NC-510G)를 신청서에 첨부하십시오.

양식의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 변경 인정 신청' 항목:

- 항목 5에서는 미성년자가 새로운 성별 및 성별 식별 정보로 법원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항목의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이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항목 6에 표시하십시오. 이 항목은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부모에게 신청에 대한 이의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 (1) 후견인, 소송 후견인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했고, (2)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항목 7에 표시하십시오. 이 항목은 미성년자의 생존한 조부모에게 신청에 대한 이의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양식의 '캘리포니아 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항목:

- 미성년자가 이미 이름 변경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이름 변경 사항이 반영되도록 출생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항목 8에 표시하십시오. 표시한 경우, 이름 변경 판결문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항목 8을 표시한 경우, 항목 10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항목 9에서는 법원이 인정할 성별 변경 사항과 신청서에서 신청한 이름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출생증명서를 정정 발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해당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양식의 '이름 변경 신청' 항목:

참고: 신청에서 미성년자의 이름 변경이나, 이전 이름 변경 사항이 반영된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발급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의 항목 8 및 10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미성년자가 자신의 출생증명서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안내 사항을 따르십시오.

-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양식 NC-500의 상단에 있는 “이름 변경 신청서”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 항목 10a에 미성년자의 현재 법적 이름, 변경 후 법적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출생증명서상 성별 및 현 주소를 작성하십시오.
- 항목 10b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 항목 10c에서는 해당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는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 항목 10d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해당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 항목 10e는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름 변경 신청에 대한 이의는 일정 기간 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이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이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양식의 나머지 항목

- 항목 11에는 신청서에 첨부된 페이지의 장수를 기재하십시오.
- 최초 진술: 미성년자는 텍스트 상자에 있는 진술문을 작성(본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새로운 성별에 해당하는 네모칸에 표시)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명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항목 1에 이름이 기재된 성인도 양식에 서명해야 하며, 생존한 부모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및 접수 수수료

민사사건 표지(양식 CM-010) 원본을 준비합니다. 본 정보 시트의 1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신청서 원본 및 첨부서류 또는 사유소명명령을 민사사건 표지와 함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고, 신청서 및 사유소명명령의 접수 표시가 된 사본 2부를 받으십시오. 수수료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 비용 면제 신청(양식 FW-001) 및 상급 법원 수수료 및 비용 면제에 관한 정보 시트(양식 FW-001-INFO)를 참조하십시오.



6. 사유소명명령 및 심리 기일

사유소명명령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특정 신청과 관련하여 사유소명명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이 신청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 후견인, 소송 후견인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위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사유소명명령—미성년자의 성별 변경 인정 및 출생증명서 정정발급(양식 NC-520)의 원본 1부와 사본 2부 상단을 작성하십시오(양식 제목 위 부분을 작성하고,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네모칸에 표시하십시오). 해당 양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서기가 판사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을 귀하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사유소명명령 처리 방법

사유소명명령은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상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미성년자의 생존한 부모 전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서명하지 않은 부모에게 명령서와 신청서 사본을 명령 발부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 후견인, 소송 후견인 또는 복지 및 시설법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따른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신청을 제기했고,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생존한 조부모에게 명령서와 신청서 사본을 명령 발부일로부터 4주 이내에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받아야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양식과 신청서는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받아야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양식을 직접 송달하거나 수령증명서 반환식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의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해당인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송달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송달한 사람이 송달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NC-221/NC-321/NC-52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

사유소명명령 발부 후 6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귀하와 이의 제기자에게 심리의 일자, 시간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발송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7. 법원 심리

이의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심리가 열리는지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심리가 열리는 경우 모든 문서의 사본을 심리에 가져오십시오. 담당 사법관이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사법관이 양식 NC-530, 즉 명령서 원본에 서명합니다.

8. 장애 관련 편의 제공 요청

귀하가 장애가 있고 법원에 있는 동안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양식 MC-410)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ADA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방법(양식 MC-410-INFO)을 참조하십시오.

9. 출생증명서

귀하가 캘리포니아에서 출생한 경우, 성별 변경 사항 또는 이름 변경이 반영된 정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원 명령서의 등본을 주무장관 및 주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주 등록관에게 아래 연락처 및 주소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Vital Records - MS 5103

P.O. Box 997410

Sacramento, CA 95899-7410

전화: 916-445-2684

웹사이트: cdph.ca.gov

10. 셀프 헬프 가이드

자세한 정보는 성별 인정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원 셀프 헬프 가이드

(selfhelp.courts.ca.gov/gender-change-recognition-order-inde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법원마다 본 안내사항을 보완하는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이름 및 성별 변경 신청을 담당하는 부서,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등에 관한 추가 서면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